#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

제정 2008. 6. 1.
개정 2013.11.18.
개정 2023. 7. 1.
개정 2023.12. 1.
개정 2024. 3. 1.
개정 2024.11.1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술 또는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본교 소속의 모든 연구자와 직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개정 2024.11.13.)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1.13.)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개정 2024.11.13.)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개정 2024.11.13.)
3.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중복게재 행위 (신설 2024.11.13.)
8. 기타 제2항의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개정 2024.11.13.)

② (삭제 2024.11.13.)

**제4조의2(일반부정행위의 범위)** 일반부정행위라 함은 건전한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5.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본조신설 2024.11.13.]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교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④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 및 본 조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13.)
8. 그 밖의 위 각 호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4.11.13.)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혁신처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6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13.)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장 제보 및 접수

**제11조(부정행위의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제목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11조의2(부정행위의 검증)** 검증은 사안의 특성과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둘 이상의 소관부서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처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3.]

**제12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변론)**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4장 예비조사

**제15조(예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11.18.)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4조의2 정해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024.11.13.)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3.11.18.)

**제17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허위제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 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제5장 본 조사

**제18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위원회의 본 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② 본 조사는 본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13.)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위촉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30% 이상 위촉한다. 단, 피조사자가 본교 직원인 경우 위원 중 20% 이상을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11.18., 2024.11.13.)

④ 해당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19조의2(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보자는 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 및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1.13.]

**제2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4. 조사결과

## 제6장 본 조사 이후의 조치

**제22조(판정)** ①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10일 이내 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 2024.11.13.)

③ (삭제 2023.12.1.)

**제23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

③ 위원회는 재심의 여부 및 추가조사 여부를 심의 확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사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장은 본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외부인인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11.13.)

1. 징계 (신설 2024.11.13.)
2.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신설 2024.11.13.)
3.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신설 2024.11.13.)
4.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신설 2024.11.13.)
5. 해당 학위논문에 의하여 수여된 학위의 취소 (신설 2024.11.13.)
6.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 (신설 2024.11.13.)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신설 2024.11.13.)

② (삭제 2024.11.13.)

③ (삭제 2024.11.13.)

1. (삭제 2024.11.13.)
2. (삭제 2024.11.13.)
3. (삭제 2024.11.13.)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3.)

⑤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1.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징계를 요청
2.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⑥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제5항의 조치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 제7장 자료의 보관 및 비밀엄수

**제25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 주무부서에서 5년간 보관한다.

**제26조(비밀엄수)**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위원회 위원・간사 등을 포함한다)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8장 보 칙

**제27조(운영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